

고	계	장	보	장	인	사	과	장	경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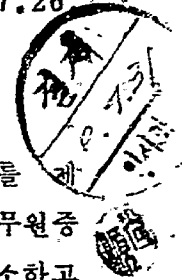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총무처

인사 202.2-1611
232

7806
(70-4436)

1980. 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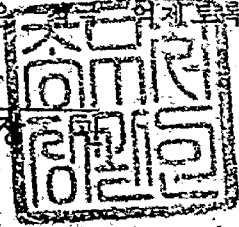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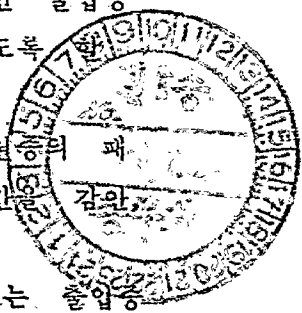
수신 수신처참조
 제 목 공무원증 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인사 202.2-1611 (80.7.26) 호의 이첩서발입
 공무원증과 청사출입증의 이중 발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저하고 출입증의 기관별 상이로 인한 출입상의 불편 및 공무원증
 의 직급별 색채구분으로 인한 하위직의 패용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자 급별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조
 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이의 시행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기행사와
고과
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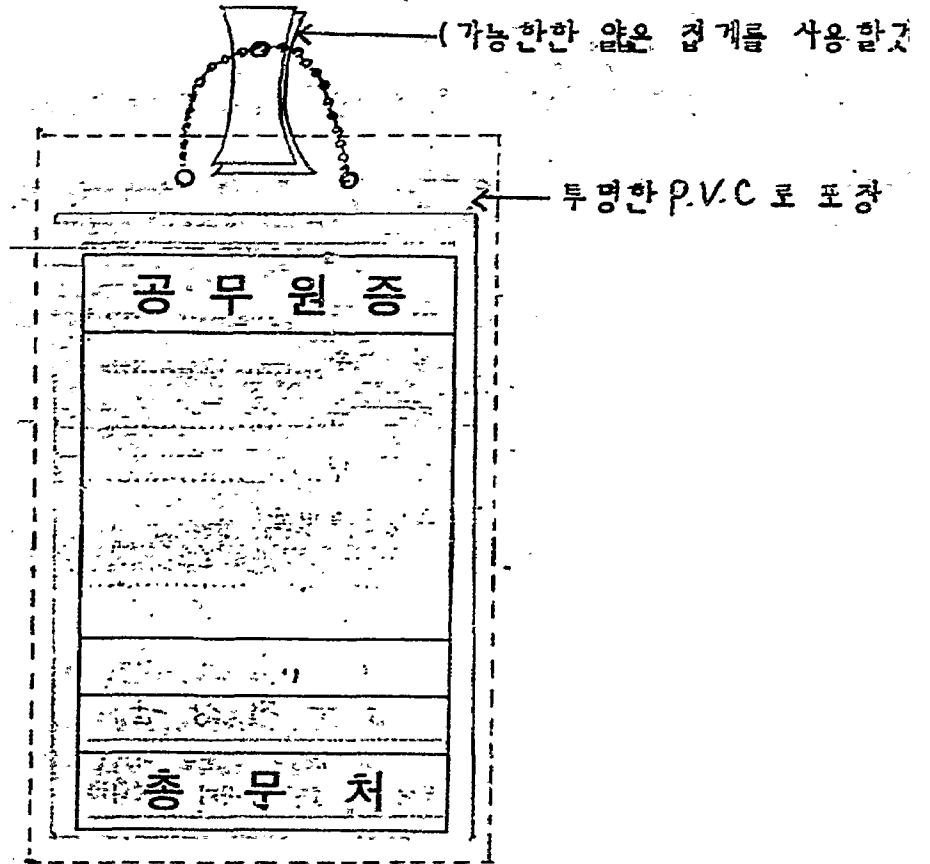
아 래

1. 공무원증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증 용지의 색채는 급별 구분없이 노랑색으로 정함. (단, 공무원증 전면의 성명 기재란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2. 출입증의 남발을 방지하고 공무원증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코자 하니, 동급정액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처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도록 것.
3. 전공무원의 개정 공무원증 규칙에 의한 공무원증의 패용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증의 제작 및 발급기간을 감함. 공무원증은 80. 9. 1부터 패용하기로 함.
4. 80. 8. 31까지는 구 규칙에 의한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하기로 하되 신규 및 재발급은 신규에 의해 이루어질 것. 끝.



서울특별시		경계
접수일	1980. 7. 28	일
접수처	수신처	다. 라. 바(1).
주무과	계	02. 서구1-17. 서각1-7. 서41-70.

(規 格) 공무원증 모형



- 지질 : 노랑색 인쇄용지 190 g/㎡ 임 (단, 성명기재란은 흰색임)
- 기타 자세한 기재요령등은 개정된 공무원증 규칙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